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0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 : 김원이 · 박홍근 · 인재근

송갑석 · 신정훈 · 김경만

김민철 · 김회재 · 박성준

서영석・윤미향・아수진비

이정문 · 황운하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부합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지방중소도시의 주변 개발로 인한 원도심의 기능 약화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의 쇠퇴를 막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구지정 및 지원 등의 특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에 지방중소도시의 쇠퇴진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토록 하고,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 및 관련 계 획수립, 세제지원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쇠퇴하는 지방중소 도시를 시급히 재생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 신설 등).

법률 제 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쇠퇴진단"을 "지방중소도시 등의 쇠퇴진단"으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지방중소도시 등에서 인구가 현저한 감소한 지역 제4장에 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4(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 지정 등)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13조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방중소도시의 쇠퇴를 막고 해당 지방중소도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 지정 및 지정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 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국유재산·공유

재산 등의 처분 등,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의 특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의 처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정되는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① 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①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쇠퇴진단</u> 및 물리적·사회적·	3. 지방중소도시 등의 쇠퇴진단
경제적·문화적 여건 분석	
4. ~ 12. (생 략)	4. ~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	4
생전략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	
화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	
상을 갖추어야 한다.	<u></u>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	1. 지방중소도시 등에서 인구가
<u>역</u>	현저한 감소한 지역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26조의4(지방중소도시의 활성
	화지구 지정 등) ① 전략계획
	수립권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이 수립된 지역으로서 제13조
	제4항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지역에서 시행하

는 사업이 지방중소도시의 쇠 퇴를 막고 해당 지방중소도시 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중소도시의 활성 화지구 지정 및 지정계획의 수 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에 대하여 예산 및 인력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 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국유재 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공 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 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의 완화 등의 특례에 관한 사 항에 대해서 제30조, 제30조의 2, 제31조 및 제32조를 적용한 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중소도시의 활성화지구의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 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